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35

발의연월일: 2021. 1. 21.

발 의 자:김경만・위성곤・정춘숙

진성준 • 박홍근 • 민형배

박영순 · 이광재 · 김승워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 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3자와 거래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제1호카목)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무단 수집ㆍ이용ㆍ유통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 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 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6호 신설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란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 6.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사기·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 하는 행위
 - 나.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이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라.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부정경쟁행위 나"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5조 중 "부정경쟁행위나"를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한다.

제6조 중 "부정경쟁행위나"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정경쟁행위나"를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부정경쟁행위나"를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1772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부정경쟁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정경쟁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정경쟁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14조의3 본문 중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부정경쟁행위를"을 "부정경쟁행위 또는 같은 조제6호라목에 따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5호·제6호 및 이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
	터"란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
	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
	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기
	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u>말한다.</u>
<u> <신 설></u>	6.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
	취・사기・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
	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
	<u></u> 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
	하는 행위
	나.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부

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 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 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 용・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이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고 데이터
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라.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 구권 등) ① <u>부정경쟁행위나</u>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 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는 자는 <u>부정경쟁</u> 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1. <u>부정경쟁행위나</u> 제3조의2제1 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 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2. <u>부정경쟁행위나</u>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 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3. <u>부정경쟁행위나</u> 제3조의2제1 3. <u>부정경쟁행위, 데이터</u>

또는 그 무품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
구권 등) ① <u>부정경쟁행위, 데</u>
이터 부정사용행위,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u>.</u>
②
<u>.</u>
1.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
2.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
ㅇ 보기되게되시 제시리 보기

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 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u>부정경쟁행위나</u> 제3 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전송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u>부정경쟁행위나</u> 제3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지다.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 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u>부정경쟁행</u> 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u>부정경쟁행위나</u>

사용행위,
4 <u>부정경쟁행위, 데이</u>
<u>터 부정사용행위,</u>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u>부정경쟁행위, 데이터</u>
<u>부정사용행위,</u>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
된 신용의 회복)
부정경쟁행
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 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 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 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 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

네이더 구성사용의	생귀,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u>부정경쟁행위,</u>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		

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
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
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
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7727호 부정경쟁방지 및

일부개정법률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 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		
<u>용행위,</u>		
, (최권기 기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72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u>행위</u>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한 자가 그 <u>부정경쟁</u> 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 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 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 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 액으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 ② <u>부정경쟁행위</u>, 제3조의2제1 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 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 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 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u>부정경쟁행위</u>, 제3조의2제1 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u>부정경쟁행위, 데이</u>
터 부정사용행위
1.•2. (현행과 같음)
②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
② <u>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u> 사용행위
<u>사용행위</u>
<u>사용행위</u>
사용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 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 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 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 를 고려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u>부정경쟁행위</u>, 제3조

<u></u> 부정경쟁행위, 데
이터 부정사용행위
④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
,

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을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있다.

⑥·⑦ (생 략)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기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 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터 부정사용행위
(⑥・⑦ (현행과 같음)
제.	14조의3(자료의 제출)
	14조의3(자료의 제출)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	
-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부정사용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은 <u>부정경쟁행위</u> , 제3조의2제1	<u>부정경쟁행위</u> , 데이터 부정
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u>사용행위</u>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	
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	
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	
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	
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	
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	
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 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② ~ ⑤ (생 략)

제18조(벌칙)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u>부</u> 정경쟁행위를 한 자
- 2. (생략)
- ④·⑤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수</u>
③
1
<u></u> 부정
경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
라목에 따른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를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